



4단계 BK21 사업 자체운영규정

국민대학교 자율주행xEV 혁신인재 교육연구단

단장 : 박기홍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부단장 : 이근호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제1장. 총칙

제2장. 사업단의 구성

제3장. 사업단의 운영

제4장. 해외연수 및 국제화 활동

제5장. 보칙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혁신인재 양성사업 (미래자동차분야)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BK21 사업

『자율주행xEV 혁신인재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 규정

2020.11.01. 제정
2021.06.23. 개정
2022.02.0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교육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한국연구재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자율주행xEV 혁신인재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교육연구단 조직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사업기간) ① 총 사업기간 2020년 9월 1일 ~ 2027년 8월 31일 (1 ~ 8 차년도) 이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사업단의 구성

제4조(조직) ① 교육연구단은 교육연구단장, 교육연구단 부단장,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③ 교육연구단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교육연구단의 부단장 임명 권한
2.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를 성과에 따라 균형적으로 배분할 권한
3. 산학협력 전담인력 및 행정직원을 고용할 권한
4. 참여교수의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배분할 권한
5. 교육연구단 구성원에게 운영비를 분배할 권한

제5조(운영위원회)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의 장은 교육연구단장이 맡고, 운영위원은 교육연구단 참여 교수 전원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연구단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참여교수의 참여 제한 및 교체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단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4. 신진연구인력 임용에 관한 사항
5.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 개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1. 교육연구단장이 교육연구단 운영을 위해 소집하는 경우
2. 연구위원 3인 이상 또는 연구위원 수의 20% 이상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1. 운영위원이 해당 운영위원회 참석이 불가능하여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위임장을 제출한 인원수는 의결 시 과반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체평가위원회) ① 교육연구단은 운영계획 추진 및 실적 평가, 개선을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장은 국민대학교 산학연구부총장이 맡고, 평가위원 구성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평가위원은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최소 1인 포함한다.
3.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육연구단 운영위원 또는 국민대학교 정년트랙 부교수 이상 인원을 포함한다.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교육연구단은 자체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⑤ 자체평가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사업단의 운영

제7조(참여교수) ① (참여교수 자격) 교육연구단에 참여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전임교원(이하 “교수”라 한다)으로 한다.

② (참여교수 제한) 교육부 훈령 제367호,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있다.

1. 휴직 및 1년 초과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
2. 연구년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교육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교수

③ (참여교수 교체)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참여교수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여교수를 교체 할 수 있다.

1.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2.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3.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으로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교육부 및 연구재단 운영 규정에 따라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정상적인 교육 및 연구수행이 불가한 경우

제8조 (참여교수 평가) ① 연차별로 교육연구단장 및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및 교육연구단 참여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② 평가항목은 연구부문, 인력양성부문, 산합협력부문, 교육연구단운영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평가항목의 평가점수 및 산출방법은 [별첨1]에 따른다.
- ③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연구단장은 참여교수별 연구장학금 및 성과급 산정에 반영한다.
- ④ 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 ⑤ 평가 결과는 참여교수의 사업 참여 제한 및 교체 심의 기준으로 반영 할 수 있다.

제9조(참여대학원생) ①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에 의거,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이하 참여대학원생)은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에 전일제로 등록한 참여교수의 지도를 받는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별첨2] ‘4단계 BK21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및 [별첨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② 제①항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교육연구단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해당 학위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1.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요건 제70조를 충족한 자
- 2.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자율주행xEV 혁신인재 교육사업단’

학사운영 지침”의 FM-CORE 마일리지를 달성한 자

3. 제2호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소명한 후, 운영위원회의 학위수여 적합여부 심의를 통과한 자

④ 참여대학원생은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또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참여기간에 교육연구단의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창업한 대학원생 중 수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에 계속 참여하여 제10조 3항의 연구장학금 지급을 제외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참여대학원생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⑥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장 및 대학의 승인을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학기당 주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⑦ 참여대학원생은 타 기관에 취업 및 자격증 대여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참여대학원생은 참여자격이 박탈되며, 이와 관련한 반환금 발생 시 책임은 지도교수에게 귀착된다. 교육연구단장은 차년도 예산 배정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⑧ 참여대학원생은 국내외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연1회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⑨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국제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제10조(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대학원생 연

구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말하며, 학기별로 참여대학원생 총 수의 70% 이내에서 선발된다.

② 제8조와 제11조의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연구단장은 학기별로 각 참여교수 별 연구장학금 총 예산 및 지원대학원 생 수를 결정하고, 참여교수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학원생을 선 정하고, 지원액은 제③항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대학원생 개인별 계좌 입금의 형태로 지급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 월 100만 원 이상

제11조(참여대학원생 평가) ① 연차별로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실적 및 성과, 교육연구단 프로그램 참여도를 평가한다.

② 평가항목은 학술연구부문, 산학실무부문, 글로벌협력부문, 교육연구단 참여부문, 연구계획서부문, 지도교수평가부문으로 구분하고, [별첨4]의 참여대학원생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③ 평가항목 중 학술연구부문, 산학실무부문, 글로벌협력부문에 대한 상 세 사항은 [별첨5]와 같고, 각 항목에 대한 배점(마일리지) 산정을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부문에서 실적의 인정은 논문의 출판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배점은 주저자의 경우 배정 마일리지의 100%를, 공동저자인 경우

에는 배정 마일리지의 1/(저자수)를 인정한다. 각 학위과정의 신입생은 입학전 1년간의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2. 산학실무부문에서 발명특허의 경우 본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되어 등록된 건으로 한정하고, 배점 인정은 배정 마일리지의 1/(개발자수)를 인정한다. 각 학위과정의 신입생은 본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되지 않은 실적도 포함하여 입학전 1년간의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3. 글로벌협력부문에서 논문, 특허의 공동저자 중 최소 1인의 소속기관이 외국 소재인 경우에 한하여, 국제공동연구로 인정한다. 각 학위과정의 신입생은 입학전 1년간의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평가항목 중 교육연구단부문은 교육연구단 운영팀의 기록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각 학위과정의 신입생에 대한 평가배점은 0점으로 한다.

⑤ 평가항목 중 연구계획서부문은 참여대학원생이 매 학기 수행할 연구 계획을 제출하고 지도교수가 평가한다. 신입생의 경우, 해당 평가배점을 20점으로 한다.

⑥ 평가항목 중 지도교수평가부문은 지도교수가 참여대학원생의 정부지원과제 및 산학협동과제 참여 기여도, 대외 경진대회/학술대회 수상실적, 전학기 교과성적, 인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⑦ 참여대학원생 평가 시기 및 평가점수 관리는 각 호에 따른다

1. 참여대학원생의 평가는 매 학기말 시행한다.

2. 참여대학원생 중 각 학위과정 신입생은 최종 등록 후 입학전 제출된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시행한다.

3. 평가점수는 직전하기 점수와 함께 관리한다.

⑧ 우수 참여대학원생에게는 교육연구단장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국민*스타 대학원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1. SCI(E) 논문실적 제출자

2. FM-CORE 마일리지 우수자
3. 성과공유회 성과실적 제출자

제12조(신진연구인력) ①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에 의거, 교육연구단장은 계약교수 및 박사후과정생 (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고 한다)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신진연구인력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지원 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박사후과정생 지원 자격은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임용 시점에 박사학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한다.
- ③ 신진연구인력 채용을 위한 심사 및 임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단장이 임명하는 3인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수행하고, 1차 합격자를 선정한다.
 3.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에서 대면심사를 수행하고,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학에 추천한다.
 4. 본교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 심사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④ 신진연구인력 계약기간은 최소 1년을 기본 단위로 매년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우수한 연구실적 보유 시 최대 4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연구실적이 미진할 경우 교육연구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⑤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건비는 월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한다.
2.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는 사업비로 4대보험관련 경비는 사업비 또는

교비지원금으로 집행한다.

3. 교육연구단장은 대학 규정에 따라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정하되, 월 최소 인건비는 300만원으로 하고,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 시 지급한다.

⑥ 신진연구인력은 소속 교육연구단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기간 중 소속 교육연구단 외의 이중소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⑦ 신진연구인력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장 또는 대학의 승인을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인건비 등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고, 학기당 주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⑧ 국제저명논문 게재실적이 우수한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교육연구단장이 사업비 또는 교비지원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산학협력전담인력) ①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에 의거, 교육연구단장은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지원 자격은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으로 제한 한다.

③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인건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건비는 월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한다.

2. 산학협력 전단인력의 인건비는 사업비로 4대보험관련 경비는 사업비 또는 교비지원금으로 집행한다.

3. 교육연구단장은 대학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정하고,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 시 지급한다.

제 4 장 해외연수 및 국제화 활동

제14조(단기연수) ① 단기연수 경비는 연수기간 15일 이내의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해외연수를 위한 경비를 의미한다.

② 국제학술대회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4개국 이상 참여하는 학회

2.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인 학회

3. 구두발표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인 학회

(단,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발표자의 1/3)

③ 국제학술대회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1. 국제학술대회의 논문 또는 요약문을 투고하고, 구두발표하는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2. 국제학술대회의 논문 또는 요약문을 투고하고, 포스터발표하는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중 3인 이내

3. 제2호에서 3인이 안될 경우, 논문의 공동저자인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중 제2호의 잔여인원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이면서, 교신저자로 기입된 참여교수 중 참여대학원생을 동반하는 자

④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연수는 참여대학원생이 MOU체결 해외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으로 한정한다.

⑤ 단기연수경비의 지원 내용은 본교 여비규정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학회등록비, 항공료, 체재비를 지원한다.

2.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해외연수는 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원한다.

- ⑥ 단기연수는 연차별 수요조사를 통하여 참여교수별로 신청을 받고, 교육연구단장은 참여 연구실별 균등한 기회 및 금액이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 ⑥ 단기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자는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항공권, 출입국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⑦ 단기연수 경비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에게 귀착된다. 교육연구단장은 차년도 예산 배정에 있어 해당 참여교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제15조(장기해외연수)** ① 장기해외연수의 대상은 박사과정 참여대학원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제출된 장기연수계획서 및 참여대학원생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연구단장이 최종 결정한다.
- ②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협력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 ③ 장기해외연수 경비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해외연수생의 지원 기간은 15일 초과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본교 여비 규정에 따른 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원하며, 연수기간이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 단축된 경우는 해당기간에 대한 체재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 ④ 장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자는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항공권, 출입국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장기해외연수 경비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참여교수에게 귀착된다. 교육연구단장은 차년도 예산 배정에 있어 해당 참여교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제16조(해외학자초빙) ①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2조에 의거,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 ②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 ③ 당해연도 해외학자 초빙을 희망하는 참여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신청하고, 운영위원회는 추천된 해외학자의 연구분야 및 저명도를 심의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교육연구단장은 초빙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④ 초빙된 해외학자는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협력 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 자문 등의 활동 및 세미나/특강을 통하여 교육연구단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 ⑤ 해외학자에 대한 지원은 본교의 전문가활용규정에 따르며, 초빙수당, 체제비, 항공료를 포함할 수 있다.
- ⑥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 제17조(교육연구단 운영비) ① 총 사업비의 10% 이내 또는 3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지원 항목은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② 행정직원 성과급은 교육연구단의 자체평가보고서, 연차·중간·최종보고서 작성 및 교육연구단의 우수한 성과를 수행하였을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18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규정 및 지침 그리고 본교의 관련 제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참여교수 평가항목 별 점수 및 산정 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항목 점수	평가점수 산정법
연구부문 (최대 40점)	Science, Nature, Cell (편)	100	각 세부항목에 대해서 다음 예시를 기준으로 계산 예) *국제학술지를 2편 게재하고, 참여학생 10명, 석사1년차(석박사1년차포함) 3명인 경우, $\text{산정 점수} = 2 \times 20 \times 0.5 \times (1/\text{참여교수수} + 2/(10-3))$ 단, 참여학생 모두가 석사1년차인 경우는 분모1로 계산 (전체논문편수 및 참여학생수고려)
	국제학술지(SSCI,A&HCI) (편)	40	
	국제학술지(SCI,SCIE 상위 5%이내) (편)	60	
	국제학술지(SCI,SCIE 상위 10%이내) (편)	40	
	국제학술지(SCI,SCIE 상위 20%이내) (편)	30	
	국제학술지(SCI,SCIE 상위 40%이내) (편)	25	
	국제학술지(SCI,SCIE) (편)	20*	
	국제학술지(SCOPUS) (편)	10	
	국내학술지 (연구재단등재지) (편)	5	
	국제학술대회 발표 (편)	5	
	국내학술대회 발표 (편)	2	
인력양성 부문 (최대 20점)	참여대학원생 (1명당)	1	$1 \times (\text{참여대학원생 수})$
	국제공동연구 수행 (논문, 교육 등) (건)	3	$3 \times N\text{건}$
	정규교과목 운영 및 단기강좌 (건)	3	$3 \times N\text{건}$
	관련분야 저서	10	$10 \times (1/\text{저자수})$
산학협력 부문 (최대 20점)	산업체 연구비 수주실적 (1천만원당)	2	$2 \times \text{사업비}(\text{천만원})$ (최대 10점)
	중앙정부 및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실적 (1천만원당)	1	$1 \times \text{사업비}(\text{천만원})$ (최대 10점)
	국제발명특허 (건)	10	$10 \times N\text{건}$
	국내발명특허 (건)	3	$3 \times N\text{건}$
	기술이전 (1천만원당)	5	$5 \times \text{기술이전비}(\text{천만원})$
	창업	5	$5 \times N\text{건}$
교육연구단 운영부문 (20점)	운영위원회의 참석/보고서 작성	7	출석 및 참석여부
	업무지원 (협의회 등)	3	참석 여부
	교육연구단장 평가	10	

[별첨2] 4단계 BK21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양식

4단계 BK21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 교육연구단(팀)명 : (교육연구단(팀)장 :)
 참여자 성명 : (생년월일 :)
 참여구분 : 참여교수 / 신진연구인력 / 산학협력 전담인력 / 참여대학원생

상기 본인은 4단계 BK21 사업 참여자로서 사업 훈령과 규정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4단계 BK21 사업 참여자로서, 사업 훈령 및 지침 상 명시되어 있는 참여 자격 기준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을 확인합니다.
-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연구단(팀)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비롯한 사업비와 관련한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충실히 준수하고 집행하겠습니다.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인건비와 관련한 아래의 유의사항을 항상 준수하며,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 및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
| ✓ 각 개인의 통장·도장 일괄 관리 및 일정 금액을 회수하여 공동 관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 |
| ✓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등 부당한 지시·요구 확인 시 관련 기관에 즉시 알림 |
| ✓ 참여대학원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민권익위 신고 등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의혹이 발생하였을 때, 연구장학금 수령통장 사본 열람 등 감사원, 교육부, 재단 또는 대학 등 관련기관 점검에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함 |

년 월 일

성명 (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귀하

[별첨3-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국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인당 1건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관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관한 안내(법 제15조 제2항)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안내(법 제17조 제2항)
<p>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리 및 성과추적 <p>2. 수집하는 개인정보(일반)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등록번호,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p>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 <p>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p>1. 정보를 제공받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감사원 - 신한카드* <p>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성과 추적, 감사 - 연구비카드 발급 및 관리* <p>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감사원) 참여인력의 연구자등록번호,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신한카드) 카드 발급대상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 <p>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감사원) 성과 추적, 감사 등이 완료되는 시점, (신한카드) 연구비카드 해지 이후 5년간 <p>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카드와 관련한 정보 제공은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만 적용되며, 그 외는 해당 없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법(시행령 포함)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4단계 BK21 사업 참여인력 본인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및 성과 관리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참여인력 정보

대학명	OOO 대학교	교육연구단(팀) 명	oooooooooooo	교육연구단(팀)
-----	---------	------------	--------------	----------

참여구분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동의		서명
				개인정보 제공	제3자 제공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신학협력전담인력/대학원생/행정직원	홍길동	대학원생	YYYY.MM.DD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작성일) 20 년 월 일

[별첨3-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영문)

Agreement on the Collection · Use ·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Submit one form per person)

○ Guidance on the collection, use,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put type="radio"/> Guidance on the collection, use, and consent to use of personal information (법 제15조제2항)	<input type="radio"/> Guidance on consent to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법 제17조제2항)
<p>1.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ject management and performance tracking <p>2. Personal information items (general) collecte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earch registration number, personal information, educational background, experience, research achievements, etc. <p>3. Period of reten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til the completion of performance tracking <p>4. Disclaimer on the right to refuse consent and disadvantages due to refusal of cons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icipants may refuse to consent to the agreement to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Those who decline the agreement acknowledge that they could be barred from participation in BK21 FOUR program. 	<p>1. Parties who receive the inform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ational Assembly,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 Shinhan Card* <p>2. Purpose of us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by the recipie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rvey analysis, performance tracking, auditing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 Issuing and managing research expense cards* <p>3. Personal information items to be provided</p> <p>(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ational Assembly,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 Participating personnel's registration number, personal information, academic background, career, research achievements, etc.</p> <p>(Shinhan Card) – Cardholder's personal information, contact information, etc.*</p> <p>4. Period of personal information retention and use by the recipients</p> <p>(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ational Assembly,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 Until the completion of performance tracking and auditing</p> <p>(Shinhan Card) – For a period of five years following cancellation of the research expense fund card</p> <p>5. Disclaimer on the right to refuse consent and disadvantages due to refusal of cons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icipants may refuse to consent to the agreement to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Those who decline the agreement acknowledge that they could be barred from participation in BK21 FOUR projects.

*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cards is only applicable when a research fee card is issued, and no other information applies.

❖ Guidance on the Act on the Collection, Use,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Enforcement Decree)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5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rticle 17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BK21 FOUR* participants themselves or graduate students (the graduates) understand that there is a need for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o utilize information related to the academic background, career, research achievements, etc. of the *BK21 FOUR* program participants for effective project and performance management, and agree to provide various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this information being protected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In addition, it is acknowledged that, for the convenience of collecting various materials necessary for business management and performance management, the copy of the consent form signed and sealed by the participant is the same as the original.

❖ Information on participating personnel

University	000 Univ.	Title of Educational Research Group (Team)	00000 Educational Research Group
------------	-----------	--	----------------------------------

Classification	Full Name	Position	Date of Birth	Consent, such as for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Signature
				Personal Information	Third-party Provision	
Participating Professor/ Up-and-coming research personnel/industry cooperation personnel/students/administrators	Steve Jobs	Student	YYYY.MM.DD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Date entered into) Year: _____ Month: _____ Date: _____

[별첨4] 참여대학원생 평가표 양식

4단계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 평가표

성명		학위과정	
학번		참여학기	
지도교수명		신입생 여부	
4단계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으로서, 0000년 0월 ~ 0000년 0월 (0 개월) 의 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성명: (인)	

평가 항목	개인별 실적	마일리지점수	평가배점	평가점수
학술연구부문 (출판승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국내 학술지 게재 실적 - 논문제목, 저널명, JCR, 주저자/공동저자, 총저자수, 출판승인 일자 순으로 기입) - 증빙서류 (논문 사본 및 JCR) 	자체운영규정 제11조 및 별첨5를 기준으로 한 실적합계 점수	30 (마일리지 200점 이상 만점)	
산학실무 (1건당, 등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국내 발명 특허 등록 실적 - 실용/의안신안 등록 실적 - SW 등록 실적 - 기술이전 실적 - 증빙서류 (등록증 사본) 	자체운영규정 제11조 및 별첨5를 기준으로 한 실적합계 점수	20 (마일리지 60점 이상 만점)	
글로벌협력 부문 (1편당, 발표승인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국내 학술대회 발표 - 국제공동연구 참여 - 증빙서류 (학술대회 게재 논문 사본, 결과 보고서 등) 	자체운영규정 제11조 및 별첨5를 기준으로 한 실적합계 점수	15 (마일리지 50점 이상 만점)	
교육연구단 참여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구단 프로그램 (세미나, 장단기연수 등) 참여 실적 - iPBL/비교과Skill-Up프로그램 등 참여 실적 - 교육연구단 요청 서류 기한내 제출 등 - 보고서 작성 지원 업무 참여 등 - 필요시 증빙 제출 	-	15 (신입생의 경우 0)	
연구계획서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계획서 제출 -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 포함 	-	5 (신입생의 경우 20)	
지도교수평가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과제, 산학협동과제 참여실적 - 대외 경진대회/학술대회 수상 등 - 교과 성적 	-	25	
합계			110	
※타 정부지원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지원대학원생 선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참여대학원생 참여율: 00%)				
지도교수 (인)				

[별첨5] 참여대학원생 평가를 위한 FM-CORE 마일리지 인정 항목 및 배점표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마일리지
학술연구 (1편당, 출판 승인 기준)	Science, Nature, Cell	1000
	국제학술지(SSCI,A&HCI)	400
	국제학술지(SCI,SCIE 전공저널 분야별 상위 5%이내)	600
	국제학술지(SCI,SCIE 전공저널 분야별 상위 10%이내)	400
	국제학술지(SCI,SCIE 전공저널 분야별 상위 20%이내)	300
	국제학술지(SCI,SCIE 전공저널 분야별 상위 40%이내)	250
	국제학술지(SCI,SCIE)	200
	국제학술지(SCOPUS)	150
	국내학술지(연구재단등재지)	100
산학실무 (1건당, 등록 기준)	국제발명특허	300
	국내발명특허	60
	실용/의장신안	30
	S/W 개발/등록	50
	기술이전 (1백만원당)	10
글로벌협력 (1편당, 발표 승인 기준)	연구재단 인정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50
	국내학술대회 발표 논문	30
	국제공동연구 가산점 (실적 중복인정 가능)	50

4단계 BK21 사업 FM-CORE 마일리지 평가표

성명	홍길동	학위과정	
학번	A2020000	참여학기	
지도교수명	○ ○ ○	신입생 여부	○ / ×
<p style="text-align: center;">4단계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으로서, 해당 기간의 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6월 00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 홍길동 (인)</p>			

FM-CORE 마일리지 인정 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박사 필수 (*)	평가배점 (마일리지)	- 실적기간 :	실적내용 구체적 작성 (실적 제목 및 참여자 등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2020.09.~2021.06	
학술연구 (1편당, 출판승인기준)	Science, Nature, Cell (편)	*	1000		실적없음
	국제학술지(SSCI,A&HCI) (편)	*	400		실적없음
	국제학술지(SCI,SCIE 전공저널 분야별 상위 5%이내) (편)	*	600		실적없음
	국제학술지(SCI,SCIE 전공저널 분야별 상위 10%이내) (편)	*	400		실적없음
	국제학술지(SCI,SCIE 전공저널 분야별 상위 20%이내) (편)	*	300		실적없음

	국제학술지(SCI,SCIE 전공저널 분야별 상위 40%이내) (편)	*	250		실적없음
	국제학술지(SCI,SCIE) (편)	*	200	100	<p>논문명 : 총 저자 : □□□, OOO (총 2명) 참여인원 : OOO 참여저자 (나머지 저자는 타학교 저자임) 저널명 : IEEE Transactions on Magnetics 출판일자 : 2021.06.01.</p>
	국제학술지(SCOPUS) (편)		150		실적없음
	국내학술지 (연구재단등재지) (편)		100		실적없음
	국내학술지 (연구재단등재후보지) (편)		80		실적없음
	학술연구 합계 점수			100	
산학실무 (1건당, 출원 및 등록기준)	국제발명특허 (건)	*	300	52.5	<p>PCT 출원 2건. 1.특허제목: 참여인원 : OOO, OOO, OOO, OOO (4명) 국제 출원일 : 2021.04.23 2.특허제목: 참여인원 : OOO, OOO, OOO (3명) 국제 출원일 : 2020.10.23.</p>
	국내발명특허 (건)		60		실적없음
	실용/의장신안 (건)		30		실적없음
	S/W 개발/등록 (건)		50		실적없음
	기술이전 (1백만원당)		10		실적없음
	산학실무 합계 점수			52.5	
글로벌협력 (1편당, 발표승인기준)	연구재단 인정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편)	*	200		실적없음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편)		50		실적없음
	국내학술대회 발표 논문 (편)		30		실적없음

	국제공동연구 가산점 (실적 중복인정 가능) (편)	50		실적없음
	글로벌협력 합계 점수	0		
	총 평가 점수	152.5		
위 기재된 해당 학생의 실적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BK21 Four 사업단장 박기홍 (인)				
지도교수 ○ ○ ○ (인)				

- * 증명서류는 반드시 별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 실적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민*스타인재 선발 : 직전학기와 현학기의 실적(1년)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학기에 신청 불가(1년 후 신청 가능)
 - 학위수여요건 확인 : 입학년월~논문심사일 기간 중 BK21사업 참여기간의 실적
2020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BK21사업 참여자는 학위수여요건으로 FM-CORE 마일리지가 추가됨.
따라서, 졸업논문심사를 받는 자는 학위수여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히 작성해야 함
- * 박사학위 수여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박사필수(*) 중 최소 한가지 세부항목에서 주저자로서 마일리지를 적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SCOPUS 논문이나 등재지로만 마일리지 점수를 적립할 경우 본 요건을 만족할 수 없다.
- * 논문, 학술지 : 주저자의 경우 배정 마일리지의 100%를 인정하며, 공동저자인 경우에는 1/저자 수로 인정한다.
발명, 특허 : 출원, 등록 둘 중 하나라도 사업기간 내이면 인정하며, 산학협력단에 신고(발명신고서 제출) 하여야 한다.
단독일 경우 100% 인정, 공동인 경우에는 1/개발자 수로 인정한다.(출원은 등록 배점의 30%를 인정한다)
- * 실적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제출증빙 건에 대해서 배정 마일리지의 30%를 인정할 수 있다.
세부항목별로 최대 1건까지 가능하다. 단, SCI/E 분야별 상위 %는 제출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 즉, 기본 SCI/E 점수(200점)을 기준으로 30%를 계산한다.
- * 공동저자 중 최소 1인의 소속기관이 외국 소재인 경우에 한하여, 국제공동연구로 인정한다.

[별첨7]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자가 체크 확인서

1. 학술대회

학술대회명		
학회웹사이트		
주관기관		
개최기간	YYYY MM DD~YYYY MM DD	개최국가(도시명)

2. 확인사항

* Question *	* Caution *
이 학회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만약 들어본 적이 없다면 등록할 때 조심해야 함
웹사이트와 e-mail주소는 합법적으로 보이는가?	e-mail이 무료계정이거나 URL이 무료 웹사이트라면 의심스러운 학회일 수 있음
존경하는 나의 동료가 이 학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가?	동료 등이 이 학회에 한번도 발표한 적이 없다면 참석하기 전 두 번 이상 고려할 것
주최측이 아첨하는 e-mail을 보내는가?	신뢰할 만한 학회는 생각을 공유하지만 자부심을 치켜세우지 않음
주최측은 이 학회가 권위있는 학술대회라고 주장하는가?	신뢰할 수 있는 학회는 그들의 신뢰성을 정당화 할 필요가 없음
누가 이 학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신뢰하는 전문적인 학술·과학기술협회나 단체에 의해 운영되지 않으면 조심할 것
주최자가 신속하게 논문 수락을 보증하는가?	의심스러운 학회는 논문 초록에 대하여 짧은 의사결정 시간을 보장함
주최자는 학회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것을 보장하는가?	신뢰할 수 있는 학회는 동료평가 없이 논문 게재를 결코 보장하지 않음
학회가 리조트나 관광명소에서 열리는가?	학회가 학문적인 학회로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로 선전한다면 약탈적인 학회일 수 있음
이 학회가 사실이라고 보기기에 너무 좋은가?	사실이라고 보기기에 너무 좋으면 약탈적인 학회일 가능성 있으므로 조언자와 상의할 것

<발췌> Avoiding Predatory Journals and Questionable Conference : A Resource Guide>

(캘거리 대학, Sarah Elaine Eaton 교수 집필)

◆ 해외 학술대회 및 이를 위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위하여 위의 유의사항을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인)

지도교수 : (인)